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8
----------	-----

2020. 3. 12.(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사유

○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향유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안 제4조)

- 문학진흥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등록문학관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보흠)

- 이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향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 안 제5조에서는 문학진흥 지원 근거마련을,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 안 제11조에서는 등록문학관 지원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조례안은 문학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학진흥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 학술활동 및 전문인력양성과 교육 지원, 국제교류 촉진 지원, 그리고 문학관등록심의 등을 위한 문학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 37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송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8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송미애,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이옥규, 정상교,
이상식

1. 제정 이유

-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향유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안 제4조)
- 문학 진흥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등록문학관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학진흥법」, 「문학진흥법시행령」, 「문학진흥법시행규칙」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라.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23.(10일간)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문학 진흥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 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문학진흥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5.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의 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 문학관 등록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학진흥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문학 작가 또는 문학 전공 교수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1년 1회 정기회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서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문서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등록문서관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30조의 등록문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문학진흥법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① 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 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4.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5.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② 법제2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16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유형	관장	등록자료	전문인력	시설
1. 국립문학관	1명	500점 이상	5명 이상	가. 전시실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1천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시청각실, 열람실 및 체험관 등 라. 도난 방지시설, 온도·습도 조절 장치
2. 공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습도 조절 장치
3. 사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습도 조절 장치

비고

1. "등록자료"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 자료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원본 자료를 말하며, 등록 이후 그 보존과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사립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